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23호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1일

## 강릉시 의회의장

###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관계 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 운행 차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릉시 택시운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자동차 적용대상(안 제2조)
- 다.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 전화번호: 033-640-4051
- 팩스번호: 033-640-4070
- 전자우편(이메일): ps7430@korea.kr

붙임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차령(별표 비고 가에 따라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장요건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의 요건에 적합한 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도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

**강릉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구분	사업의 구분		차령
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경형·소형)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9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11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11년
	일반택시운송사업	일반택시(경형·소형)	5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6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8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8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구분	사업의 구분		대상
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경형·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운송사업	일반택시(경형·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